#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

- 수시
- 정시
- 재외국민과 외국인

- 「고등교육법시행령」제33조 제3항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주요사항을 요약한 것입니다. 세부사항은 추후 〈최종 모집요강〉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
##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

	■ 수시 주요사항	4
Ι.	■ 정시 주요사항	8
1.	■ 학생부교과전형 전형방법	9
주요	■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방법	10
사항	■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	1′
	■ 전형요소별 반영비율	12
	■ 학생부교과(학생부교과) ·····	14
	■ 학생부교과(지역인재) ·····	15
	■ 학생부교과(농어촌학생)(정원외) ······	16
	■ 학생부교과(기초생활 및 차상위)(정원외)	17
Ⅱ. 수시	■ 학생부종합(일반학생) ·····	18
	■ 학생부종합(글로벌인재) ·····	19
	■ 학생부종합(대안학교) ·····	20
	■ 학생부종합(사회기여자 및 배려자)	2
	■ 학생부종합(기회균형) ·····	23
	■ 학생부종합(소프트웨어인재) ·····	25
	■ 학생부종합(장애인 등 대상자)(정원외)	26
w.	■ 수능(일반학생)	28
Ⅲ. 정시	■ 수능(농어촌학생)(정원외) ·····	29
10 ^I	■ 수능(기초생활 및 차상위)(정원외)	31
	■ 재외국민(3월 입학)(정원외)	33
N.	■ 전 교육과정 이수자(3월/9월 입학)(정원외)·	35
재외국민교	■ 북한이탈주민(3월 입학)(정원외)	37
외국인	■ 외국인(3월/9월 입학)(정원외)	38

# PART 1. 주요사항

- 1. 수시 주요사항
- 2. 정시 주요사항
- 3. 학생부교과전형 전형방법
- 4.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방법
- 5.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
- 6. 전형요소별 반영비율

# 1. 수시 주요사항

## 가. 총 모집인원(정원내외 포함)

2023학년도		2024학년도
786명	•	전년도와 동일

## 나. 전형요소별 모집인원

2023학년도			
구분	전형요소	인원	비율
	학생부교과	236	30.0
수시	학생부종합	501	63.7
	기타 (재외국민)	14	1.8
정시	수능위주	35	4.5
	합계	786	100

2024학년도	
<u>전년도와 동일</u>	
<del></del>	

## 다. 전형명 변경 및 전형 신설

	2023학년도 		
전형요소	전형명		
	학생부교과(학생부교과)		
학생부	학생부교과(지역인재)		
교과	학생부교과(농어촌학생)(정원외)		
	학생부교과(기회균형선발)(정원외)		
학생부 종합	<u>학생부종합(G-IMPACT인재)</u>		
	학생부종합(글로벌인재)		
	학생부종합(대안학교)		
	학생부종합(사회기여자 및 배려자)		
	<u>학생부종합(고른기회)</u>		
	학생부종합(소프트웨어인재)		
	학생부종합(장애인 등 대상자)(정원외)		
	수능(일반학생)		
수능	수능(농어촌학생)(정원외)		
	<u>수능(기회균형선발)(정원외)</u>		

2024학년도		
전형요소	전형명	
	학생부교과(학생부교과)	
학생부	학생부교과(지역인재)	
교과	학생부교과(농어촌학생)(정원외)	
	학생부교과(기초생활 및 차상위)(정원외)	
	학생부종합(일반학생)	
	학생부종합(글로벌인재)	
	학생부종합(대안학교)	
학생부 종합	학생부종합(사회기여자 및 배려자)	
	<u>학생부종합(기회균형)</u>	
	학생부종합(소프트웨어인재)	
	학생부종합(장애인 등 대상자)(정원외)	
	수능(일반학생)	
수능	수능(농어촌학생)(정원외)	
	수능(기초생활 및 차상위)(정원외)	

## 라. 전형별 모집인원

시기	전형요소	전형명	인원	증감	비고
		학생부교과(학생부교과)	136		
	학생부	학생부교과(지역인재)	60		
	교과	학생부교과(농어촌학생)(정원외)	20		
		학생부교과(기초생활 및 차상위)(정원외)	20		전형명 변경
		학생부종합(일반학생)	<u>209</u>	<u>- 10</u>	전형명 변경
		<u>학생부종합(글로벌인재)</u>	<u>105</u>	<u>+ 5</u>	
		<u>학생부종합(대안학교)</u>	<u>95</u>	<u>+ 5</u>	
수시	학생부 <i>종</i> 합	학생부종합(사회기여자 및 배려자)	45		
		학생부종합(기회균형)	34		전형명 변경
		학생부종합(소프트웨어인재)	10		
		학생부종합(장애인 등 대상자)(정원외)	3		
		재외국민(정원외)	14		
	기타	전 교육과정 이수자(정원외)	_		모집인원 제한없음
	714	외국인(정원외)	-		모집인원 제한없음
		북한이탈주민(정원외)	-		모집인원 제한없음
		수능(일반학생)	35		
정시	수능	수능(농어촌학생)(정원외)*	0		
		수능(기초생활 및 차상위)(정원외)*	0		전형명 변경
		합계	751		

<sup>\*</sup> 별도의 모집인원은 없으며, 수시 학생부교과(농어촌학생) / 학생부교과(기초생활 및 차상위) 미충원 시 이월하여 선발함

## 마. 지원자격 변경

#### 1) 학생부종합(소프트웨어인재)

2023학년도		2024학년도	
<u>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</u> 로서 소프트웨어 분야에 잠재력을 갖춘 자	•	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<u>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</u> <u>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</u> 소프트웨어 분야에 잠재력을 갖춘 자	

#### 2) 학생부종합(사회기여자 및 배려자)

#### 2023학년도

-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,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5년 이상 근무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(직업군인, 소방공무원, 경찰공무원, 교도관공무원, 환경미화원, 집배원)
-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일 이후 통산 2년 이상 도서벽지에서 근무한 공무원의 자녀
- 국내외 교단, 교회, 단체에서 파송된 경력이 있는 선교사의 자녀
- 농어촌 교회 또는 미자립 교회에서 시무한 경력이 있는 목회자의 자녀
- 다자녀(3자녀이상) 가정의 자녀
- 다문화 가정 자녀
-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~제3호에 해당 하는 자 및 그의 자녀
- 장애인의 자녀
- 조손가정의 손자녀
- 민주화운동관련자 본인 또는 그의 자녀

- 북한이탈주민의 자녀

#### 2024학년도

#### 전년도와 동일

#### 삭제

(학생부종합(기회균형) 전형으로 지원자격 이동)

#### 3) 학생부종합(기회균형)

#### 2023학년도

-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국가보훈대상자
- 농어촌학생
- 기초생활 및 차상위
- 특성화고교 졸업자
- 서해5도 학생
- 만학도(만23세 이상)

\_

#### 2024학년도

#### 전년도와 동일

- 자립지원 대상 아동
- 북한이탈주민 또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

## 사.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: 학생부교과전형

	2023학년도
전형명	수능최저학력기준 (① 또는 ②)
· 학생부교과	①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(사회/과학 중 1개 과목) 중 <u>2개 영역 합 7</u> 등급 이내 (단, 2개 영역 합에 수학(기하), 수학(미적분), 과탐이 포함되는 경우 한 등급 하향) ②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(사회/과학 중 1개 과목) 중 <u>1개 영역 1등급</u>
<ul><li>지역인재</li><li>농어촌학생</li><li>기회균형 선발</li></ul>	①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(사회/과학 중 1개 과목) 중 2개 영역 합 7 등급 이내 (단, 2개 영역 합에 수학(기하), 수학(미적분), 과탐이 포함되는 경우 한 등급 하향) ②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(사회/과학 중 1개 과목) 중 1개 영역 2등 급 이내

		2024학년도
	전형명	수능최저학력기준 (① 또는 ②)
	· 학생부교과	①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(사회/과학 중 1 개 과목) 중 <u>2개 영역 합 7등급 이내</u> ②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(사회/과학 중 1개 과목) 중 <u>1개 영역 1등급</u>
•	·지역인재	①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(사회/과학 중 1 개 과목) 중 2개 영역 합 7등급 이내 ②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(사회/과학 중 1개 과목) 중 1개 영역 2등급 이내
	· 농어촌학생 · 기초생활 및 차상위	①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(사회/과학 중 1 개 과목) 중 <u>2개 영역 합 8등급 이내</u> ②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(사회/과학 중 1개 과목) 중 <u>1개 영역 3등급 이내</u>

\* 그 외 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

## 아. 면접 배수

	2023학년도	
구분	전형명	1단계 선발 비율
수시	학생부종합 전(全) 전형	250%
十二	재외국민 전형	350%

\* 학생부교과 전형, 수능 전형은 면접 미실시

2024학년도
<u>전년도와 동일</u>

# 2. 정시 주요사항

## 가. 선발인원

2023학년도
수능(일반학생) 35명
수능(농어촌학생)(정원외) 0명
수능(기회균형선발)(정원외) 0명

2024학년도
<u>전년도와 동일</u>
<u>전년도와 동일</u>
<u>수능(기초생활 및 차상위)(정원외) 0명</u>

\* 정원외 전형은 별도의 모집인원은 없으며, 수시 학생부교과(농어촌학생) / 학생부교과(기초생활 및 차상위) 미충원 시 이월하여 선발함

## 나.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

2023학년도		
<ul> <li>일괄합산: 수능 100%</li> <li>국어 : 35 %</li> <li>수학 : 35 %</li> <li>영어 : 20 %</li> <li>탐구(사회/과학) : 10%</li> <li>한국사 : 등급별 가산점</li> <li>* 탐구영역은 사탐, 과탐 중 우수한 1개 과목을 자동 반영함</li> </ul>	•	
* 수학(미적분) 또는 수학(기하) 선택 시 10% 가산점을 부여함		

	2024학년도
•	<u>전년도와 동일</u>
	<u>삭제</u>

## 다. 영어 등급별 반영 점수

2023학년도		2024학년도
1등급: 100점, 2등급: 95점, 3등급: 90점, 4등급: 80점, 5등급: 70점, 6등급: 60점, 7등급: 50점, 8등급: 40점, 9등급: 30점	<b>&gt;</b>	전년도와 동일

## 라. 한국사 등급별 가산점

2023학년도		2024학년도
1등급~4등급: 10점, 5등급: 9.8점, 6등급: 9.6점, 7등급: 9.4점, 8등급: 9.2점, 9등급: 9점	•	전년도와 동일

# 3. 학생부교과전형 전형방법

## 가. 학생부 반영교과

구분	반영교과*	반영과목	점 <del>수</del> 활용 지표**
<del>공통</del> 과목 일반선택과목	[국어, 영어, 수학, 사회 교과의 전 과목]과	반영교과의	석차등급 (1~9등급)
진로선택과목	[국어, 영어, 수학, 과학 교과의 전 과목] 중 이수단위가 높은 교과 반영	전 과목	성취평가등급 (A, B, C)

<sup>\*</sup> 반영교과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교과항목에 표시된 대로 반영함. 단, 전문교과의 과학계열은 과학, 외국 어계열은 영어, 국제계열은 사회 교과로 반영하되 그 외의 사항은 위원회 심의에 따름

## 나. 학생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

학생부 요소별 반영비율	반영 학기	고교졸업년도
교과성적 100%	3학년 1학기까지 반영 (학년 구분없이 이수단위로 반영, 재수생 포함)	제한없음

## 다. 비교내신 적용대상자 반영방법

전형대상	반영방법
검정고시 출신자	- 필수과목: 6과목(국어, 수학, 영어, 사회, 과학, 한국사) - 환산점수: 원점수 96점 이상(77점으로 환산), 원점수 95~91점(60점으로 환산), 원점수 90~86점(40점으로 환산), 원점수 85~81점(23점으로 환산), 원점수 80~76점(11점으로 환산), 원점수 75점 이하(0점으로 환산)
2016년 2월 이전 졸업자 해외고 출신자 기타	- 자체 기준에 따라 처리(추후 모집요강 참조)

## 라. 수능최저학력기준

전형명	수능최저학력기준 (① 또는 ②)							
학생부교과	①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(사회/과학 중 1개 과목) 중 2개 영역 합 7등급 이내 ②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(사회/과학 중 1개 과목) 중 1개 영역 1등급							
지역인재	①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(사회/과학 중 1개 과목) 중 2개 영역 합 7등급 이내 ②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(사회/과학 중 1개 과목) 중 1개 영역 2등급 이내							
농어촌학생 기초생활 및 수급자	①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(사회/과학 중 1개 과목) 중 2개 영역 합 8등급 이내 ②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(사회/과학 중 1개 과목) 중 1개 영역 3등급 이내							

<sup>\*\*</sup> 등급별 배점구간 등은 추후 모집요강 참조

# 4.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방법

#### 가. 1단계 서류심사

서류심사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나타난 학업역량, 진로역량, 공동체역량 등을 본교 교육이념 및 인재상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.

#### ▶ 제출서류

전형명	공통	기타
일반학생 글로벌인재 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기회균형 소프트웨어인제 장애인 등 대상자	학교생활기록부	· 검정고시/해외고 졸업자(해당서류 제출): 성 적증명서, 검정고시 성적증명서, 학교생활 기록부 대체서식 등
대안학교		· 검정고시 출신자: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등

<sup>\*</sup> 기타 자격과 관련된 서류는 추후 모집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## 나. 2단계 면접고사

면접고사는 서류심사와 함께 학생을 평가하는 중요한 평가방법으로 본교는 개별면접을 통해 지원자를 평가합니다.

# 5.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

개설 학부	모집단위	전형유형	전형명	모집인원											
<mark>인문사회계열</mark> 경영경제학부 경영학전공		[수시] 학생부 교과	학생부교과(학생부교과)	136											
경영학전공 경제학전공 Global Management전공 국제어문학부			학생부교과(지역인재)	60											
국제지역학전공 영어전공 <b>법학부</b>			학생부교과(농어촌학생)(정원외)	20											
한국법전공 US and International Law전공 <b>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</b>			학생부교과(기초생활 및 차상위)(정원외)	20											
상담심리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<b>커뮤니케이션학부</b>			학생부종합(일반학생)	209											
언론정보학전공 공연영상학전공 <b>창의융합교육원</b>			학생 <del>부종</del> 합(글로벌인재)	105											
글로벌융합전공 글로벌한국학(한국어교육)전공 글로벌한국학(한국언어문화)전공		F & 1.13	학생부종합(대안학교)	95											
글포크인국덕(연국년이문의/현공 학생설계융합전공 이공계열		[수시] 학생부 종합	학생부종합(사회기여자 및 배려자)	45											
<b>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</b> 건설공학전공 도시환경공학전공	74 <del>2</del> 14	<u>0 H</u>	학생부종합(기회균형)	34											
<b>기계제어공학부</b> 기계공학전공 전자제어공학전공	· 전 학부		학생부종합(소프트웨어인재)	10											
생명과학부 생명과학전공 창의융합교육원			학생부종합(장애인 등 대상자)(정원외)	3											
정의 중입 보육년 글로벌융합전공 수학통계전공 학생설계융합전공			재외국민(정원외)	14											
<b>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</b> 시각디자인전공 제품디자인전공			[수										[수시]	전 교육과정 이수자(정원외)	제한없음
IT융합대학 전산전자공학부		기타	외국인(정원외)	제한없음											
컴퓨터공학전공 AI·컴퓨터공학심화전공 전자공학전공			북한이탈주민(정원외)	제한없음											
전자공학심화전공 Information Technology전공 <b>AI융합교육원</b>			수능(일반학생)	35											
AI융합전공 데이터사이언스전공 ICT <b>창업학부</b>		[정시] 수능	수능(농어촌학생)(정원외)	0*											
ICT융합전공 AI Convergence&Entrepreneurship전공 Global Entrepreneurship전공			수능(기초생활 및 차상위)(정원외)	0*											
	합	계		786명											

- \* US & International Law전공, Global Management전공, Information Technology전공, 글로벌융합전공은 100% 영어 강의 전공입니다.
- 신입생 100% 전 학부 자율전공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. 전 학부 자율전공은 입학 시 전공을 정하지 않고, 2학년 진학 시에 계열의 구분 없이 학생 희 망에 따라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모집단위입니다.
- ・ 모집학부 및 전공 명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 학부 및 전공 명칭 변경사항은 우리 대학교 입학 홈페이지(http://admissions.handong.edu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수시 전형(정원 내)에서 선발하지 못한 인원은 정시 수능(일반학생)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.
- ・ 수시 학생부교과(농어촌학생)과 수시 학생부교과(기초생활 및 차상위)에서 선발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정시 수능(농어촌학생)과 정시 수능(기초생활 및 차상위)으로 각각 이월하여 선발합니다.
-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모집인원은 정시 원서접수 기간 전에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.

# 6. 전형요소별 반영비율

구분	전형 유형	전형명	모집인원	전형요소별 반영비율	1단계 선발비율	수 <del>능</del> 최저
		학생부교과(학생부교과)	136			
	학생부	학생부교과(지역인재)		일괄합산:		010
	교과	학생부교과(농어촌학생)(정원외)	20	학생부교과 100%		있음
		학생부교과(기초생활 및 차상위)(정원외)	20			
		학생부종합(일반학생)	209			
		학생부 <u>종</u> 합(글로벌인재)	105			
		학생부종합(대안학교)				
수시	학생부 <i>종</i> 합	학생 <del>부종</del> 합(사회기여자 및 배려자)	45	1단계: 서류 100% 2단계:	250%	\ \alpha \exic
		학생부종합(기회균형)	34			
		학생부종합(소프트웨어인재)	10	서류 70%, 면접 30%		
		학생부종합(장애인 등 대상자)(정원외)	3			
		재외국민(정원외)	14	14	350%	
		전 교육과정 이수자(정원외)	제한없음			
	기타	외국인(정원외)	제한없음	1단계: 서류 100% 2단계: 서류 50%, 면접 50%	제한 없음	
		북한이탈주민(정원외)		제한없음	일괄합산: 서류 40%, 면접 60%	
		수능(일반학생)	35			
정시	수능 위주	수능(농어촌학생)(정원외)	0*	일 <u>광</u> 합산: 수능 100%		
		수능(기초생활 및 차상위)(정원외)	0*			

<sup>\*</sup> 수시 전형(정원 내)에서 선발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정시 수능(일반학생) 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.

<sup>\*</sup> 수시 학생부교과(농어촌학생)과 수시 학생부교과(기초생활 및 차상위)전형에서 선발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정시 수능(농어촌학생)과 정시 수능(기초생활 및 차상위)전형으로 각각 이월하여 선발합니다.

<sup>\*</sup>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모집인원은 정시 원서접수 기간 전에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.

# PART 2. 수시

- 1. 학생부교과(학생부교과)
- 2. 학생부교과(지역인재)
- 3. 학생부교과(농어촌학생)(정원외)
- 4. 학생부교과(기초생활 및 차상위)(정원외)
- 5. 학생부종합(일반학생)
- 6. 학생부종합(글로벌인재)
- 7. 학생부종합(대안학교)
- 8. 학생부종합(사회기여자 및 배려자)
- 9. 학생부종합(기회균형)
- 10. 학생부종합(소프트웨어인재)
- 11. 학생부종합(장애인 등 대상자)(정원외)

# 1. 학생부교과(학생부교과)

## 1. 모집단위 및 인원

모집단위	전 학부 (자율전공)
선발인원	136명

## 2. 지원자격

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 고 인정되는 자

## 3. 수능최저학력기준

#### 수능최저학력기준 (① 또는 ②)

① 국어, 수학, 영어, 탐귀(사회/과학 중 1개 과목) 중 2개 영역 합 7등급 이내

②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(사회/과학 중 1개 과목) 중 1개 영역 1등급

## 4.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

사정단계	선발비율	전형요소별 반영비율
일괄합산	100%	학생부교과 100%

## 5. 전형방법

# 2. 학생부교과(지역인재)

1. 모집단위 및 인원

모집단위	전 학부 (자율전공)
선발인원	60명

2. 지원자격

대구·경북권 소재 정규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로서 대구·경북권 소재 정규고등학교에서 3년 전 과정을 이수한 자

• 고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(졸업예정자 포함)까지 3년 전 과정을 이수하여야 함

3. 수능최저학력기준

## 수능최저학력기준 (① 또는 ②)

①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(사회/과학 중 1개 과목) 중 2개 영역 합 7등급 이내

②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(사회/과학 중 1개 과목) 중 1개 영역 2등급 이내

4.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

사정단계	선발비율	전형요소별 반영비율
일괄합산	100%	학생부교과 100%

5. 전형방법

# 3. 학생부교과(농어촌학생)(정원외)

#### 1. 모집단위 및 인원

모집단위	전 학부 (자율전공)
선발인원	20명

#### 2. 지원자격

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로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
- 1) 중·고등학교 6년 거주자(부모 거주):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(졸업예 정자 포함)까지 본인 및 부·모 모두가 농어촌 읍·면 지역 또는 도서·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농어촌 읍·면 지역 또는 도서·벽지 지역에 소재한 중·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- 2) 초·중·고등학교 12년 거주자(부모 비거주):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 (졸업예정자 포함)까지 지원자 본인이 농어촌 읍·면 지역 또는 도서·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농어촌 읍·면 지역 또는 도서·벽지 지역에 소재한 초·중·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  - 중·고등학교 6년 거주자의 학생 재학기간과 학생·부모 거주 충족 기간은 중학교 입학 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 까지이며, 초·중·고등학교 12년 거주자의 학생 재학기간과 학생 거주 충족 기간은 초등학교 입학 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임
  -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경우만을 인정함(학업 중단 후 재입학할 경우에도 거주기간은 중간 단절 없이 연속되어야 함)
  - 학생과 부모의 거주는 각각의 주민등록상 거주기록과 일치해야 함
  - 읍·면 지역:「지방자치법」제3조에 의한 읍·면을 의미함(광역시, 도, 도·농 통합시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·면을 포함)
  -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」제2조에 의한 도서·벽지도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
  - 신활력지역의'동'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음
  - 읍·면 소재 고등학교 중 특목고(과학고, 외국어고, 국제고, 체육고, 예술고, 마이스터고, 영재고)는 제외함
  -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함
  - 읍·면 지역 또는 도서·벽지 지역 소재 학교를 입학일 이후 전·편입학한 경우 지원할 수 없음
  - 부모의 이혼 시 부모 거주 관련 사항: 중·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부모가 이혼한 경우, 이혼 전 부모의 주소지와 이혼 후 주민등록상 지원자 본인과 거주하고 있는 부나 모의 주소지가 농어촌지역이어야 함(단, 이 경우 부나 모 한쪽에 계속 거주하여야 한)
  - 부모의 사망 시 부모 거주 관련 사항: 중·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부 또는 모(전체)
     가 사망한 경우 법률상의 사망일 이전까지의 주소지가 농어촌지역이어야 하며, 지원자 본인과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주소지가 농어촌지역이어야 함
  - 농어촌학생 전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형을 운영하기 위해 부와 모의 거주지 및 거주기간, 직장소재지에 대한 입증자료 등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

#### 3. 수능최저학력기준

#### 수능최저학력기준 (① 또는 ②)

①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(사회/과학 중 1개 과목) 중 2개 영역 합 8등급 이내

②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(사회/과학 중 1개 과목) 중 1개 영역 3등급 이내

#### 4.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

사정단계	선발비율	전형요소별 반영비율
일괄합산	100%	학생부교과 100%

#### 5. 저형방법

# 4. 학생부교과(기초생활 및 차상위)(정원외)

1. 모집단위 및 인원

모집단위	전 학부 (자율전공)
선발인원	20명

2. 지원자격

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,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
- 1)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 제1호(수급권자), 제2호(수급자)
- 2)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0호(차상위계층)에 의한 대상자
- 3)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또는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
- 3. 수능 최저학력기준

#### 수능최저학력기준 (① 또는 ②)

- ①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(사회/과학 중 1개 과목) 중 2개 영역 합 8등급 이내
- ②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(사회/과학 중 1개 과목) 중 1개 영역 3등급 이내
- 4.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

사정단계	선발비율	전형요소별 반영비율
일괄합산	100%	학생부교과 100%

5. 전형방법

# 5. 학생부종합(일반학생)

1. 모집단위 및 인원

모집단위	전 학부 (자율전공)
선발인원	209명

2. 지원자격

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3. **수능 최저학력기준** 없음

4.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

나저다네	선발비율	전형요소별 반영비율		
사정단계		서류심사	면접고사	
1단계	250%	100%	-	
2단계	100%	70%	30%	

5. 전형방법

# 6. 학생부종합(글로벌인재)

#### 1. 모집단위 및 인원

모집단위	전 학부 (자율전공)
선발인원	105명

#### 2. 지원자격

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, 졸업(예정)일 기준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
- 1) 해외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
- 2) 해외에서 초·중·고 통산 1년 이상 이수한 자
- 3) 국내소재 외국교육기관, 외국인학교, 특별법에 의한 국제학교 졸업(예정)자
  - 해외수학기간은 졸업(예정)일 기준으로 산정함
  - 해외학교는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한 학교이어야 함
  - 해외학교 과정 인정기준 : 해당국 교육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 되는 정규학교 과정만을 인정하며,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과정, 대학예비과정, 평생교육과정, 성인대학과정, 통신교육과정, 인터넷교육과정, 홈스쿨과정 등은 제외함
  - 해외이수기간 산정 시 월반, 조기졸업으로 인한 기간은 이수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
  - 국내소재 외국교육기관, 외국인학교, 특별법에 의한 국제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는 교육부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사이트 (https://www.isi.go.kr/)에서 확인 가능함
    - 위의 학교 졸업자 중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」제98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고등 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없는 자는 국내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하여야 함

#### 3.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

## 4.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

사정단계 선발비율	иншо	전형요소별 반영비율	
	서류심사	면접고사	
1단계	250%	100%	-
2단계	100%	70%	30%

#### 5. 전형방법

# 7. 학생부종합(대안학교)

## 1. 모집단위 및 인원

모집단위	전 학부 (자율전공)
선발인원	95명

## 2. 지원자격

아래 국내 대안학교의 졸업(예정)자로서 졸업(예정)일 기준으로 대안학교의 2개 학 기 이상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자

- 1)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91조에 의한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
- 2)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60조의 3의 대안학교
- 3) 비인가 대안학교 : 국내 소재의 학교만 지원이 가능함. 단, 비인가 대안학교 출 신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여야 함
  - 국내 대안학교의 졸업(예정)자는 고등학교(10~12학년) 교육과정의 졸업(예 정)자를 말함
  - 2개 학기란 1년 2학기제에서 2개 학기를 의미하며, 1년 3학기제의 경우 총 3개 학기, 1년 4학기제의 경우에는 총 4개 학기를 의미함
  - 학기 인정 범위는 정규학기를 의미하며, 계절학기, 월반, 조기졸업으로 인한 기간은 학기 수로 인정하지 않음

## 3. 수능 최저학력기준

없음

## 4.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

. LZ4 ⊏ L-7(I	иншо	전형요소별 반영비율	
사정단계	선발비율	서류심사	면접고사
1단계	250%	100%	-
2단계	100%	70%	30%

#### 5. 전형방법

# 8. 학생부종합(사회기여자 및 배려자)

#### 1. 모집단위 및 인원

모집단위	전 학부 (자율전공)
선발인원	45명

#### 2. 지원자격

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,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
- 1) 5년 이상 근무한,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
  - ① 직업군인:「군인사법」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자
  - ② 소방공무원: 「소방공무원법」제3조에 해당되는 자
  - ③ 경찰공무원:「경찰공무원법」제3조에 해당되는 자
  - ④ 교도관공무원:「교도관직무규칙」제2조에 해당되는 자
  - ⑤ 환경미화원: 시·군·구청 소속 별정직 근무원
  - ⑥ 집배원 : 우정사업본부(소속기관포함) 또는 별정우체국 소속 근무원
- 2)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일 이후 통산 2년 이상 도서·벽지에서 근무한 공무원(일반직, 교육직)의 자녀
  - ① 교육공무원 :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」제2조의 [별표] 도서·벽지 지역 및 등급별 구분표 참조
  - ② 일반공무원: 「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」제2조의 [별표1]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 구분표 참조
- 3)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
  - ① 국내외 교단, 교회, 단체에서 파송된 경력이 있는 선교사
  - ② 농어촌 교회 또는 미자립 교회에서 시무한 경력이 있는 목회자
    - 농어촌지역은 자방자치법에 따른 읍·면 지역 및 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·벽지 지역을 인정하며, 신활력지역의'동'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음
    - 시무 중 또는 시무 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으로 된 경우, 동을 읍면으로 인정함
    - 미자립 교회는 교단, 단체 등에서 미자립으로 인정한 교회만 인정함
    - 한국기성교단으로부터 이단판정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자의 자녀는 지원자격이 되지 않음
- 4) 다자녀(3자녀 이상) 가정 자녀
- 5) 다문화가정 자녀 :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모(친부)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부(친모)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
  - 단,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모(친부)가 과거에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
- 6)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~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의 자녀
- 7) 장애인의 자녀 : 부모 중 1인 이상이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인의 자녀

- 8) 조손가정의 손자녀 : (외)할아버지, (외)할머니, 손자, 손녀로 구성된 가족으로 부모 모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손자녀
  -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야 함
  - 주민등록등본상 (외)조부모와 지원자(손자, 손녀)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함
- 9) 민주화운동관련자 본인 또는 그의 자녀 : 「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 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(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 의위원회의 민주화 운동 관련자 증서 발급 가능한자) 또는 그의 자녀

#### 3.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

## 4.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

사정단계 선발비율	иныю	전형요소별 반영비율	
	선달미뀰	서류심사	면접고사
1단계	250%	100%	-
2단계	100%	70%	30%

## 5. 전형방법

# 9. 학생부종합(기회균형)

#### 1. 모집단위 및 인원

모집단위	전 학부 (자율전공)
선발인원	34명

#### 2. 지원자격

####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
- 1) 국가보훈대상자: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,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「국가보훈 기본 법」 제3조 제2호에 따른 '국가보훈대상자'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
  - 보훈(지)청장이 발급하는 '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'를 필수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를 통해 지원자격을 심사함
- 2) 농어촌학생: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로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  - ① 중·고등학교 6년 거주자(부모 거주):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(졸업예 정자 포함)까지 본인 및 부·모 모두가 농어촌 읍·면 지역 또는 도서·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농어촌 읍·면 지역 또는 도서·벽지 지역에 소재한 중·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  - ② 초·중·고등학교 12년 거주자(부모 비거주):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(졸업예정자 포함)까지 지원자 본인이 농어촌 읍·면 지역 또는 도서·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농어촌 읍·면 지역 또는 도서·벽지 지역에 소재한 초·중·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  - 중·고등학교 6년 거주자의 학생 재학기간과 학생·부모 거주 충족 기간은 중학교 입학 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 까지이며, 초·중·고등학교 12년 거주자의 학생 재학기간과 학생 거주 충족 기간은 초등학교 입학 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임
  -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경우만을 인정함(학업 중단 후 재입학할 경우에도 거 주기간은 중간 단절 없이 연속되어야 함)
  - 학생과 부모의 거주는 각각의 주민등록상 거주기록과 일치해야 함
  - 읍·면 지역:「지방자치법」제3조에 의한 읍·면을 의미함(광역시, 도, 도·농 통합시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·면을 포함)
  -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」제2조에 의한 도서·벽지도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
  - 신활력지역의'동'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음
  - 읍·면 소재 고등학교 중 특목고(과학고, 외국어고, 국제고, 체육고, 예술고, 마이스터고, 영재고)는 제외함
  -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함
  - 읍·면 지역 또는 도서·벽지 지역 소재 학교를 입학일 이후 전·편입학한 경우 지원할 수 없음
  - 부모의 이혼 시 부모 거주 관련 사항 : 중·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부모가 이혼한 경우, 이혼 전 부모의 주소지와 이혼 후 주민등록상 지원자 본인과 거주하고 있는 부나모의 주소지가 농어촌지역이어야 함(단, 이 경우 부나 모 한쪽에 계속 거주하여야 함)
  - 부모의 사망 시 부모 거주 관련 사항 : 중·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부 또는 모(전체) 가 사망한 경우 법률상의 사망일 이전까지의 주소지가 농어촌지역이어야 하며, 지원 자 본인과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주소지가 농어촌지역이어야 함
  - 농어촌학생 전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형을 운영하기 위해 부와 모의 거주지 및 거주기간, 직장소재지에 대한 입증자료 등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

- 3) 기초생활 및 차상위 :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,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- ①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 제1호(수급권자), 제2호(수급자)
  - ②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 제10호(차상위계층)에 의한 대상자
  - ③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또는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
- 4) 특성화고교 졸업자 : 국내 특성화고등학교의 졸업(예정)자로서 아래 항목 중 하나 에 해당하는 자
  - ① 본교의 모집 단위와 동일한 계열의 기준학과를 졸업한 자
  - ② 본교의 모집 단위와 동일한 계열의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
  - 동일계열 및 기준학과 : 추후 수시 모집요강 참조
  - 특성화고등학교 범위
  - 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」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, 단,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됨
  - 특성화고등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(종합고)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자
  -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(마이스터고등학교)는 제외됨
- 5) 서해5도 학생 :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로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  - ① 서해5도에서「민법」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또는 같은 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 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해5도에 설립된 중·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  - ② 서해5도에 거주하면서 서해5도에 설립된 초·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- 6) 만학도: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, 2024.3.1 기준으로 만 23세 이상인 자(2001.3.1 이전에 출생한 자)
- 7) 자립지원 대상 아동: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,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제 38조 제2항에 따라 이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①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
- ②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
- ③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 지 아니한 아동
- 8) 북한이탈주민이나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: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,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  - ①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
  - ②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
    - '북한이탈주민'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(북한)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함

## 3. **수능 최저학력기준** 없음

## 4.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

1 L74 F L7H	инніс	전형요소별 반영비율	
사정단계 선발비율 선발비율 · · ·		서류심사	면접고사
1단계	250%	100%	-
2단계	100%	70%	30%

#### 5. 전형방법

# 10. 학생부종합(소프트웨어인재)

1. 모집단위 및 인원

모집단위	전 학부 (자율전공)
선발인원	10명

2. 지원자격

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 고 인정되는 자로서 소프트웨어 분야에 잠재력을 갖춘 자

3.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

4.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

사정단계	선발비율	전형요소별 반영비율	
		서류심사	면접고사
1단계	250%	100%	-
2단계	100%	70%	30%

5. 전형방법

# 11. 학생부종합(장애인 등 대상자)(정원외)

1. 모집단위 및 인원

모집단위	전 학부 (자율전공)
선발인원	3명

2. 지원자격

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,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
- 1)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의해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인
- 2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로 국가보 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자
- 3. 수능 최저학력기준

없음

4.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

사정단계 선발비율	иншо	전형요소별 반영비율	
	( 인달미 <b>뀰</b>	서류심사	면접고사
1단계	250%	100%	-
2단계	100%	70%	30%

5. 전형방법

# PART 3. 정시

- 1. 수능(일반학생)
- 2. 수능(농어촌학생)(정원외)
- 3. 수능(기초생활 및 차상위)(정원외)

# 1. 수능(일반학생)

#### 1. 모집단위 및 인원

모집단위	전 학부 (자율전공)
선발인원	35명

\* 2024학년도 수시 전형(정원 내)에서 선발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정시(다)군 수능(일반학생) 전형으로 이월하 여 선발합니다. 정시로 이월된 모집인원은 정시 원서접수 기간 전에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.

#### 2. 지원자격

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(단,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(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 중 한 과목 이상), 한국사에 모두 응시해야 함)

#### 3. 수능 최저학력기준

없음

#### 4. 전형요소 및 빈영비율

사정단계	선발비율	대학수학능력시험
일괄합산	100%	100%

## 5. 수능 반영방법

#### 가.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

국어	수학	영어	사탐/과탐* (1개 과목)	한국사
35%	35%	20%	10%	등급별가산점

- \* 탐구는 사탐과 과탐 중 우수한 1개 과목을 자동 반영함
- 나.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의 변환점수와 한국사 가산점을 합산하여 성적 순으로 100% 를 선발합니다.
  - ① 국어, 수학, 탐구는 백분위를 반영합니다.
  - ② 영어는 아래 등급별 점수를 반영합니다.

1등급	2등급	3등급	4 <del>등</del> 급	5 <del>등</del> 급	6등급	7등급	8등급	9등급
100점	95점	90점	80점	70점	60점	50점	40점	30점

③ 한국사는 아래 등급별 점수를 반영합니다.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6등급	7등급	8등급	9등급
10점			9.8점	9.6점	9.4점	9.2점	9점	

# 2. 수능(농어촌학생)(정원외)

#### 1. 모집단위 및 인원

모집단위	전 학부 (자율전공)
선발인원	0명

\* 2024학년도 수시 학생부교과(농어촌학생) 전형에서 선발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정시(다)군 수능(농어촌학생) 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. 정시로 이월된 모집인원은 원서접수 기간 전에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.

#### 2. 지원자격

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로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(단,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(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 중 한 과목 이상), 한국사에 모두 응시해야 함)

- 1) 중·고등학교 6년 거주자(부모 거주):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(졸업예정자 포함)까지 본인 및 부·모 모두가 농어촌 읍·면 지역 또는 도서·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로서 농어촌 읍·면 지역 또는 도서·벽지 지역에 소재한 중·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- 2) 초·중·고등학교 12년 거주자(부모 비거주):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(졸업예정자 포함)까지 지원자 본인이 농어촌 읍·면 지역 또는 도서·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농어촌 읍·면 지역 또는 도서·벽지 지역에 소재한 초·중·고등학교의 전 교육과 정을 이수한 자
  - 중·고등학교 6년 거주자의 학생 재학기간과 학생·부모 거주 충족 기간은 중학교 입학 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 까지이며, 초·중·고등학교 12년 거주자의 학생 재학기간과 학생 거주 충족 기간은 초등학교 입학 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임
  -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경우만을 인정함(학업 중단 후 재입학할 경우에도 거주기 간은 중간 단절 없이 연속되어야 함)
  - 학생과 부모의 거주는 각각의 주민등록상 거주기록과 일치해야 함
  - 읍·면 지역 : 「지방자치법」제3조에 의한 읍·면을 의미함(광역시, 도, 도·농 통합시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·면을 포함)
  -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」제2조에 의한 도서·벽지도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
  - 신활력지역의'동'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음
  - 읍·면 소재 고등학교 중 특목고(과학고, 외국어고, 국제고, 체육고, 예술고, 마이스터고, 영재고)는 제외함
  -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함
  - 읍·면 지역 또는 도서·벽지 지역 소재 학교를 입학일 이후 전·편입학한 경우 지원할 수 없음
  - 부모의 이혼 시 부모 거주 관련 사항 : 중·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부모가 이혼한 경우, 이혼 전 부모의 주소지와 이혼 후 주민등록상 지원자 본인과 거주하고 있는 부나 모의 주소지가 농어촌지역이어야 함(단, 이 경우 부나 모 한쪽에 계속 거주하여야 함)
  - 부모의 사망 시 부모 거주 관련 사항 : 중·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부 또는 모(전체)가 사망한 경우 법률상의 사망일 이전까지의 주소지가 농어촌지역이어야 하며, 지원자 본인 과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주소지가 농어촌지역이어야 함
  - 농어촌학생 전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형을 운영하기 위해 부와 모의 거주지 및 거주 기간, 직장소재지에 대한 입증자료 등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

## **3. 수능 최저학력기준** 없음

## 4.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

사정단계	선발비율	대학수학능력시험
일괄합산	100%	100%

## 5. 수능반영방법

가.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

국어	수학	영어	사탐/과탐* (1개 과목)	한국사
35%	35%	20%	10%	등급별가산점

- \* 탐구는 사탐과 과탐 중 우수한 1개 과목을 자동 반영함
- 나.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의 변환점수와 한국사 가산점을 합산하여 성적 순으로 100% 를 선발합니다.
  - ① 국어, 수학, 탐구는 백분위를 반영합니다.
  - ② 영어는 아래 등급별 점수를 반영합니다.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6등급	7등급	8등급	9등급
100점	95점	90점	80점	70점	60점	50점	40점	30점

③ 한국사는 아래 등급별 점수를 반영합니다.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6등급	7등급	8등급	9등급
10점			9.8점	9.6점	9.4점	9.2점	9점	

# 3. 수능(기초생활 및 차상위)(정원외)

#### 1. 모집단위 및 인원

모집단위	전 학부 (자율전공)
선발인원	0명

\* 2024학년도 수시 학생부교과(기회균형선발) 전형에서 선발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정시(다)군 수능(기회균형 선발) 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. 정시로 이월된 모집인원은 정시 원서접수 기간 전에 입학홈페이지를 통 해 발표합니다.

#### 2. 지원자격

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,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(단,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(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 중한 과목 이상), 한국사에 모두 응시해야함)

- 1)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 제1호(수급권자), 제2호(수급자)
- 2)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 제10호(차상위계층)에 의한 대상자
- 3)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또는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

#### 3. 수능 최저학력기준

없음

#### 4. 전형요소 및 빈영비율

사정단계	선발비율	대학수학능력시험
일괄합산	100%	100%

#### 5. 수능반영방법

#### 가.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

국어	수학	영어	사탐/과탐* (1개 과목)	한국사
35%	35%	20%	10%	등급별가산점

- \* 탐구는 사탐과 과탐 중 우수한 1개 과목을 자동 반영함
- 나.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의 변환점수와 한국사 기산점을 합산하여 성적 순으로 100%를 선발합니다.
  - ① 국어, 수학, 탐구는 백분위를 반영합니다.
  - ② 영어는 아래 등급별 점수를 반영합니다.

1등급	2등급	3 <del>등급</del>	4등급	5 <del>등급</del>	6등급	7등급	8등급	9등급
100점	95점	90점	80점	70점	60점	50점	40점	30점

③ 한국사는 아래 등급별 점수를 반영합니다.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6등급	7등급	8등급	9등급
10점			9.8점	9.6점	9.4점	9.2점	9점	

# PART 4. 재외국민과 외국인

- 1. 재외국민(3월 입학, 정원외)
- 2. 전 교육과정 이수자(3월/9월 입학, 정원외)
- 3. 북한이탈주민(3월 입학, 정원외)
- 4. 외국인(3월/9월 입학, 정원외)

# 1. 재외국민(3월 입학, 정원외)

## 가. 모집단위 및 인원

모집단위	전 학부 (자율전공)
선발인원	14명

## 나. 지원자격

초·중·고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내·외 정규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중 아래 지원자 격 및 국외 재학·근무·체류기간을 충족하는 자

구분	내용
국외재학기간	■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·고교 과정 3년 이상
국외체류기간	■ 학생: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/4 이상 ■ 부모: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/3 이상
국외근무자 재직기간	■ 역년으로 통산 3년(1,095일) 이상의 국외근무/사업/영업

구분	내용
국외근무자	- 역년으로 통산 3년(1,095일) 이상의 국외 근무/사업/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 류한 자
국외근무자의 자녀	-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(1,095일)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/사업/영업하는 기간 동안, 국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(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 상의 모든 학기)을 포함하여 중·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
국외 재학기간	-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: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(약 365일)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. 단,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하는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-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: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(약 365일)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
국외 체류일수 조건	- 학생이 학기 개시일로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: 학기 개시일로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개시일 전일(약 365일)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/4 이상을, 국외근무/사업/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/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-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: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(약 365일)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/4 이상을, 국외근무/사업/영업자와 그 배우 자는 2/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- 체류일수 산정 시, 소수점 절사

#### 다. 전형방법

나당나다	инні С	전형요소별 반영비율		
사정단계	선발비율	서류심사	면접고사	
1단계	350%	100%	-	
2단계	100%	70%	30%	

\* 2단계에는 서류심사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, 1단계 서류심사 점수를 반영합니다.

### 라. 제출서류

#### 제출 서류

- 1. 고등학교 졸업(예정) 증명서
- 2.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증명서
- 3. 초·중·고등학교 성적증명서
- 4. 가족관계증명서(부모, 학생)
- 5. 출입국사실증명서(부모, 학생)
- 6. 사실증명발급·열람신청위임장(부모, 학생)
- 7. 여권 사본(부모, 학생)
- 8. 재외국민등록등본(부모, 학생)
- 9.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(국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)
- 10.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(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서류)
- 11. 국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(현지 취업자 제출서류)
- 12. 자영업자의 국외 세금납부증명서(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)
- ※ 위의 제출서류는 '(대교협)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'에 제시된 필수 제출서류이며, 기 타 제출서류는 추후 모집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# 2. 전 교육과정 이수자(3월/9월 입학, 정원외)

#### 가. 모집단위 및 인원

모집단위	전 학부 (자율전공)
선발인원	제한 없음

#### 나 지원자격

외국에서 우리나라 초·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국외 정규고등학교 졸업(예정)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, 결혼이주민(「국적법」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)

- 1.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·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.
  -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·중·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,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.
  -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,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. 단, 12 년 미만 이수 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 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합니다.
- 2.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·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·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(6개월)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.
- 3.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,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.

#### <참고> 국외재학으로 인정하는 학교

- 외국의 학교는 국외에 소재한 정규학교를 의미하며,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학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설립·운영되는 초·중등 교육과정의 정규학교에 대해서만 학력을 인정합니다. 유아원, 유치원,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과정과 사이버(통신)교육과정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
## 다. 전형방법

사정단계	ОІМНЫ	전형요소별 반영비율		
	선발비율	서류심사	면접고사	
1단계	제한없음	100%	-	
2단계	제한없음	70%	30%	

\* 2단계에는 서류심사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, 1단계 서류심사 점수를 반영합니다.

## 라. 제출서류

## 제출 서류

- 1. 고등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
- 2. 초·중·고 재학증명서
- 3. 초·중·고 성적증명서
- 4. 출입국사실증명서
- 5.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
- 6. 신분증 사본

<sup>※</sup> 위의 제출서류는 '(대교협)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'에 제시된 필수 제출서류이며, 기타 제출서류는 추후 모집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# 3. 북한이탈주민(3월 입학, 정원외)

#### 가. 모집단위 및 인원

모집단위	전 학부 (자율전공)
선발인원	제한 없음

## 나. 지원자격

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·외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## 다. 전형방법

사정단계	선발비율	전형요소별 반영비율		
		서류심사	면접고사	
일괄합산	제한 없음	40%	60%	

\* 모든 지원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면접고사를 실시합니다.

## 라. 제출서류

#### 제출 서류

- 1.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
- 2.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- 3. 학력확인서(해당자에 한함)
- \* 위의 제출서류는 '(대교협)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'에 제시된 필수 제출서류이며, 기타 제출서류는 추후 모집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# 4. 외국인<sub>(3월/9월 입학, 정원외)</sub>

#### 가. 모집단위 및 인원

모집단위	전 학부 (자율전공)
선발인원	제한 없음

#### 나, 지원자격

부모 및 학생이 모두 생득적 외국인(순수 외국인)인 경우와 생후 외국 국적 취득자(시민권 획득 등)로서 국내·외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- 생후 외국 국적 취득자의 경우, 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 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함

## 다. 전형방법

	инніо	전형요소별 반영비율		
사정단계	선발비율	서류심사	면접고사	
1단계	제한 없음	100%		
2단계	제한 없 <del>음</del>	50%	50%	

\* 2단계에는 서류심사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, 1단계 서류심사 점수를 반영합니다.

#### 마. 제출서류

저	15	- 11	
	-	서	_

- 1. 고등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
- 2. 고등학교 재학증명서
- 3. 고등학교 성적증명서
- 4.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
- 5. 외국국적증명서(부모, 학생의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)
- ※ 위의 제출서류는 '(대교협)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'에 제시된 필수 제출서류이며, 기타 제출서류는 추후 모집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## 참고)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 심사 관련 공통안내 사항

- 우리나라 학제(12년)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,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 의 결손은 1개 학기(6개월)에 한하여 인정합니다.(총 23학기, 11년 6개월 이상 충족)(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제 29조제2항제2호, 제7호 적용)
-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, 초·중·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학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(전·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)
- 동일 학년(학기)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

G4-2 대체 가능

- ▶ 단,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(복수발생 인정)
  -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
-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
-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, 부정·편법·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

〈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〉

학년 2 4 5 6 8 9 10 11 12 학기 2 2 1 1 2 1 2 1 2 2 1 2 1 2 1 2 1 | 2 1 2 재학 D D D D D D D D D D 기간 누락 A 누락 A 누랙 Α Α Α Α Α Α Α Α Α 중복학기 G7-1로 G11-1 중복학기 G2-2로 학제차이로 인한

G9-1 대체 가능

- ※ 학제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
- 기타 위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당 외국의 학제를 우리나라 학제와 비교하여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판단함
- 검정고시, 홈스쿨링,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- 단,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
- 코로나-19로 인한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,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 입학전형 관리위원회에서 지원자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

[D : 국내학교 A : 외국학교]

누락 인정